

성수 구두테마역 전시공간 관리·운영 협약서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 서울메트로, 서울시 성동구청(이하 "성동구청")은 성수동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성수역 역사 內에 설치된 구두테마 전시 설치물, 전시구조물, 조형물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를 위한 「성수 구두테마역」 內 구두테마 전시 설치물, 전시구조물, 조형물, 전시물품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모 및 범위)

협약대상 공간의 규모 및 범위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2층 대합실 1,060㎡ 규모의 구두테마 전시공간과 3층 승강장 수퍼그래픽 조성공간으로 구두테마 전시설치물, 구조물, 조형물, 전시물품 등으로 한다. 단, 협약면적과 준공면적이 상이할 경우 준공면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조(관리·운영기간)

성수 구두테마역 관리·운영 협약기간은 2014년 2월 1일 ~ 2016년 2월 29일(2년 1개월)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의 연장은 서울시, 재단, 성동구청, 서울메트로 상호간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조형물의 관리·운영)

본 협약이 성립된 때부터 재단은 「성수 구두테마역」 內 설치된 2층 대합실, 3층 승강장의 구두테마 전시설치물, 전시구조물, 조형물 등 모든 전시설치물 등의 관리는 재단이 하며 운영은 성동구청이 진행한다.

제5조(관리비 등)

- ① 성수동 구두테마 전시물, 조형물 등의 운영과 관련된 일상적 순찰, 점검, 청소, 화재보험, 공공관리비 납부 등은 성동구청이 부담한다.
- ②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성동구청이 협약 기간 중 구두테마 전시 설치물 등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①항과 같다.

제6조(조형물 등 관리)

- ① 성동구청은 당초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메트로는 전시 설치물, 구조물, 조형물 유지관리상 공사 등으로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단 및 성동구청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② 재단 및 성동구청은 설치된 모든 전시설치물 등은 서울메트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③ 성동구청은 구두테마 전시설치물 등 순찰을 철저히 하며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중 발생한 시설물 보수에 관하여는 재단 부담으로 한다.
- ④ 재단, 성동구청은 시민이 고의로 전시설치물 등 훼손시 가해자에 대해 변상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서울메트로는 전시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사항을 재단, 성동구청에 이관하며, 재단과 성동구청이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 등)

성동구청은 유지관리하고 만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8조(손해배상 등)

- ① 성동구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메트로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성동구청은 이를 변상한다.
- ② 성동구청이 협약 면적 외 불법무단 점유시에는 서울메트로의 원상복구조치에 성동구청은 즉각 응해야하며, 3회 불응한 때에는 서울메트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서울메트로는 성동구청에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성동구청이 각종 관리비 등 요금을 누계 3개월분 이상 연체 하였을 경우
나. 서울메트로의 역사내 공공상, 공익목적상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다. 성동구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울메트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기타 서울메트로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성동구청은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서울메트로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①항 나·라 호의 경우는 서울시, 재단, 성동구청, 서울메트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조형물 등 철거)

제9조 ②항에 의거 전시설치물의 존치기간 완료전 철거시, 철거비용은 추후에 서울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하며 철거 및 원상복구한다.

제11조(화재, 도난시의 책임)

서울메트로는 도난, 화재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화재 등 건물 관리상 긴급한 경우에는 성동구청이 부재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화재보험 가입)

성동구청은 전시설치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성동구청을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서울메트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문 해석)

이 협약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이 협약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과 성동구청, 서울메트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기명·날인하고 재단과 서울메트로 성동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4. 17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9층
대표이사 백 종 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구청장 고 재 득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사장 장 정 우